#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47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이광희·김문수·채현일

박지원 • 이상식 • 양문석

이재강 • 민병덕 • 정일영

김 윤·송재봉·김우영

복기왕 · 윤종군 · 박해철

이병진 • 박상혁 • 박정현

임호선 의원(19인)

찬 성 자: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음.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상 직속기관으로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을 두고 소관 업무를 보좌하고 있음에도 경호만을 위하여 있으며 경호처를 두고 있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최근 헌정문란 행위 관련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 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통령경호처가 고유의 경호업무를 넘어 친위 사 조직 역할을 하면서 과거 군사정권처럼 위법을 자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대통령과 총리 등 국가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에서 수행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 경호 업무를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제3조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 법률 제 호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직·직무범위와"를 "직무범위와"로 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원하는 사람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를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으로, "경호처에 파견된"을 "파견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호처가"를 "대통령 등의"로 한다.

다만, 이를 이유로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84조 및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국가경호국 등) ① 경찰청에 대통령 등의 경호를 위하여 국가경 호국을 둔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호처의 경호대상"을 "경호대상(이하 "대통령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처장이 경호가"를 "경호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처장은"을 "국가경호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고, 경호 목적을 달성 한 후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한 다"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대통령"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처장은"을 "국가경호국장은"으로, "있다"를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호처에"를 "국무총리 산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경호에"를 "등 경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호와"를 "등 경호와"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경호 처의 소관 사무는 경찰청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은 제 외한다)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통령경호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경찰청"을, "대통령경호처장"을 인용한경우에는 "경찰청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제1조(목적)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경호의 <u>조직·직</u>	직무범위
<u>무범위와</u> 그 밖에 필요한 사항	<u>와</u>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	1
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	
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	
동을 말한다. <u>&lt;단서 신설&gt;</u>	<u>다만, 이를 이유로</u>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84조 및 법률에 따른 정당
	한 사법 절차를 방해하여서는
	<u>아니된다.</u>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	2
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u>지원하는 사람이</u>	<u>위하여</u>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	
을 말한다.	<b></b>

- 3. "소속공무원"이란 <u>대통령경</u> <u>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u> 직원과 <u>경호처에 파견된</u> 사람 을 말한다.
- 4. "관계기관"이란 <u>경호처가</u> 경 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하다.
- - ② 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 ③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처장을 보좌한다.
- 제4조(경호대상) ① <u>경호처의 경</u> 조 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 5. (생략)
  - 6. 그 밖에 <u>처장이 경호가</u>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要人)

3 <u>대통령</u>
등의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된
4대통령 등
의
<u>.</u>
· 제3조(국가경호국 등) ① 경찰청
에 대통령 등의 경호를 위하여
국가경호국을 둔다.
<u> </u>
제4조(경호대상) ① <u>경호대상(이</u>
<u>하 "대통령 등"이라 한다)</u>
1. ~ 5. (현행과 같음)
6 <u>경호가</u>

- ②·③ (생 략)
-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u>처</u> <u>장은</u>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 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 ③ (생략)

-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대표의 신변(身邊)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 대책기구를 둘수 있다.
  - ②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 은 처장이 된다.
  - ③ ④ (생 략)
  - ⑤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 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국
가경호국은
②
하고, 경호 목적을 달성 한 후
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
호 및 안전관리) ①
¬¬¬¬¬
<u>국무총리</u>
<u>&lt;</u>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② • ③ (혀해과 같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 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 할 수 있다.

제6조(직원) ① 경호처에 특정직 〈삭 제〉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 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 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 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 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 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 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경 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 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 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 만, 전보·휴직·겸임·파견· 직위해제·정직(停職) 및 복직 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

- ② 처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 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 ③ 삭제
-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 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 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의6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 | <삭 제> 사유)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 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 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 용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③ 제2항 각 호(「국가공무원 법」 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은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비밀의 엄수) ① 소속공무 | <삭 제>

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직 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 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 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 <삭 제> 직원(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u>있</u>다.

- 1. 신체적 · 정신적 이상으로 6 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 2.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
- 3. 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 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

#### 員)이 된 때

-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 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 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 5.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 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 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 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 6.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 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수 없게 되었을 때
- ② 제1항제2호·제5호에 해당 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 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면 직하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 업 무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

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기면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 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 령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 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야 한다.

<u>제11조(정년) ① 경호공무원의 정</u> 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연령정년

<u>가. 5급 이상: 58세</u>

<u>나. 6급 이하: 55세</u>

<u>2. 계급정년</u>

가. 2급: 4년

<u>나. 3급: 7년</u>

<u>다. 4급: 12년</u>

라. 5급: 16년

② 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 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 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 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

-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 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 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합산한다.
- ④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제12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

   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제4조제 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 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 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 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또는 「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보상을 한다.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 <삭 제> 계 등)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 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③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 무원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지요청) <u>처장은</u>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협조를 요청할 수 <u>있다</u>.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u>경호처에</u>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저	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2	조
	요청) <u>국가경호국장은</u>	
		쏬
	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u>한</u>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여	) <u>}</u>
	<u>한다</u> .	
저	1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	원
	회) ①	
		- —
		- —
		<u>산</u>
	<u>하에</u>	-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생략)
-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 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대통령 <u>경호에</u> 필요한 안전
   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 2. 대통령 <u>경호와</u> 관련된 첩보·정보의 교환 및 분석
- 3. (생략)
- ⑤ (생략)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②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4
 1 <u>등 경호에</u>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 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 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 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 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소 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
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 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 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 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 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 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u><삭 제></u>

-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

   난에 해당할 때
-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 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 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 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 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 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 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 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 한 이유가 있을 때
-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 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20조(손실보상)① 처장은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인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 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삭 제> 
 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

 하여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 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를 둔다.
- ④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 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 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 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 수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렁으로 정한다.

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 <삭 제> 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